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오인환 소유물건(2025타경12148)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송석근

감정평가서번호: GS250806-1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송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우현

감정평가액	칠천팔백사십만오천팔백칠십원정(W78,405,87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송석근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오인환 (2025타경1214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8.18	2025.08.18	2025.08.19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6,305 이	토지 하	2,329.28 여	- 백	78,405,870
	합계					W78,405,8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소재 '가덕2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제시 받지 아니하였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법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조성, 매립지, 개간지 등 최근에 개량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가방식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토지만의 임대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익방식의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평가 대상 토지는 비교방식으로 평가하였음. 따라서 본건 토지의 평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토지가격을 결정하였음.

4. 기준시점 등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8월 18일로 함.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08월 18일에 실지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지가수준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대상물건의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신창면 가덕리 447-1	전	3,498.0	휴경지 및 일부 분묘	계획관리	세로 (가)	자루형 완경사	38,500
2	신창면 가덕리 488-6	임야	12,807.0	자연림 및 일부 분묘	보전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7,800

※ 매각지분 공유자 오인환 지분면적

기호(1) : $3,498 \times 1/7 \approx 499.71\text{㎡}$, 기호(2) : $12,807 \times 2/14 \approx 1,829.57\text{㎡}$

6.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의거 작성하였음.

■ 본건 기호(1,2) 토지는 공유지분 중 공유자 “오인환” 지분 전부에 대한 평가로서, 각각의 지분에 대한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 비율에 의거하여 면적 사정하였음.

■ 본건 기호(1) 토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4기가 소재하며, 규모, 이용상태 등을 보아 당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제시목록에 의거 제시외 분묘에 구매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분묘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한 받는 경우의 단가를 토지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본건 기호(2) 토지는 광범위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항공사진상 ‘분묘1기’가 목측되나, 내부통행로의 부재 및 잡목 등으로 인하여 분묘 등의 소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임야의 특성상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 할 수 있으니 경매 입찰시 재확인 바랍니다.

■ 본건 기호(2) 토지 일부가 ‘기타유류저장및송유설비 및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입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하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개요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 상황·지목·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 2025.01.01)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표준지 A	신창면 가덕리 448	전	1,550.0	전	계획관리	세로 (가)	부정형 평지	40,800
표준지 B	신창면 가덕리 산56-1	임야	4,264.0	자연림	보전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7,8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에 대한 가격 변동률로서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가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역의 지가 변동 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 (미발표시 직전월 지가변동률 적용)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표준지 A	충청남도 아산시 '계획관리지역'	2025.01.01 ~ 2025.08.18	1.308	1.01308	
표준지 B	충청남도 아산시 '보전관리지역'	2025.01.01 ~ 2025.08.18	0.215	1.00215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 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

토지 기호(1) / 비교표준지(A)				
조건	개 별 요 인 항 목		격차율	비 고
	항 목	세 부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94	본건은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계			0.9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임야지대

토지 번호(2) / 비교표준지(B)				
조건	개 별 요 인 항 목		격차율	비 고
	항 목	세 부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8	본건은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계			0.9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표준지공시지가는 과세, 보상 및 일반거래 목적 평가시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바,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따라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보정단계를 거치게 되며,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참작함으로써,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2)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가)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감정평가 목적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1-1	신창면 가덕리 39*	전	585.0	계획관리	법원경매	111,000	2024-04-23
1-2	신창면 공화리 40*	전	1,253.0	계획관리	민사소송	85,000	2023-06-30
1-3	신창면 공화리 산13*-1	임야	6,905.0	보전관리	담보	23,000	2023-04-21
1-4	신창면 가덕리 48*-6	임야	1,829.6	보전관리	법원경매	12,000	2021-11-2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2-1	신창면 가덕리 16*-1*	전	899.0	계획관리	87,741,960	97,600	2025-06-09
2-2	신창면 가내리 산3*-6	임야	1,734.0	보전관리	32,500,000	18,743	2023-10-04

3) 인근지역 지가수준

용도지역	용도	지가수준	조사처
계획관리지역	농경지	70,000 ~ 120,000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보전관리지역	임야	15,000 ~ 20,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산정방법

감정평가 기준시점에서 사례(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산출한 표준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거친 기준시점 표준지가격을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함.

$$\blacksquare \text{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text{ 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text{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선정 비교사례	감정평가전례 1-1, 1-3
비교사례 선정의견	본건이 속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사례(사정이 개입되지 아니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중 선정하였음.

(2)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	보정치 (배)	비 고
비교사례 1-1	충청남도 아산시 '계획관리지역'	2024.04.23 ~ 2025.08.18	3.233	1.03233	
비교사례 1-3	충청남도 아산시 '보전관리지역'	2023.04.21 ~ 2025.08.18	1.847	1.0184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격차율 산정

- 평가선례 기호(1-1)와 표준지 기호(A)

구분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사례기준 표준지가액	111,000	1.03233	1.00	0.848	97,171	2.351
구분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공시지가기준 표준지가액	40,800	1.01308	-	-	41,334	

* 지역요인 :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함.

* 개별요인 비교치

구분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교표준지(A) /적용사례(1-1)	0.95	0.94	0.95	1.00	1.00	0.848
결정의견						

-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 등에서 표준지가 열세함.
- 자연조건 : 일조 등 전반적인 자연조건에서 표준지가 열세함.
- 획지조건 : 경작의 편부 등에서 표준지가 열세함.
- 행정적조건 : 대등함.
- 기타조건 :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평가선례 기호(1-3)와 표준지 기호(B)

구분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사례기준 표준지가액	23,000	1.01847	1.00	0.801	18,763	2.376
구분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공시지가기준 표준지가액	7,880	1.00215	-	-	7,897	

* 지역요인 :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함.

* 개별요인 비교치

구 분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교표준지(B) /적용사례(1-3)	0.90	0.89	1.00	1.00	0.801

결정의견

-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 등에서 표준지는 열세함.
- 자연조건 : 일조 등 전반적인 자연조건에서 표준지가 열세함.
- 행정적조건 : 대등함.
- 기타조건 :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표준지	결정 보정치
인근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및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A	2.35
	B	2.37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기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40,800	1.01308	1.00	0.940	2.35	91,306	91,000
2	B	7,880	1.00215	1.00	0.980	2.37	18,341	1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거래사례 선정

1)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2-1	신창면 가덕리 16*-1*	전	899.0	계획관리	87,741,960	97,600	2025-06-09
2-2	신창면 가내리 산3*-6	임야	1,734.0	보전관리	32,500,000	18,743	2023-10-04

2) 비교사례 선정

선정 비교사례	거래사례 2-1, 2-2
비교사례 선정의견	인근지역내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음.

나. 사정보정

결정 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	보정치 (배)	비 고
비교사례 2-1	충청남도 아산시 '계획관리지역'	2025.06.09 ~ 2025.08.18	0.355	1.00355	
비교사례 2-2	충청남도 아산시 '보전관리지역'	2023.10.04 ~ 2025.08.18	1.437	1.01437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 의견	대상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

토지 기호(1) / 비교사례(2-1)				
조건	개 별 요 인 항 목		격차율	비 고
	항 목	세 부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0.97	본건은 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97	본건은 형상, 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계			0.94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임야지대

토지 기호(2) / 비교사례(2-2)				
조건	개 별 요 인 항 목		격차율	비 고
	항 목	세 부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8	본건은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계			0.9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비교사례 기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1	97,600	1.00	1.00355	1.00	0.941	92,168	92,000
2	2-2	18,743	1.00	1.01437	1.00	0.980	18,632	19,000

3. 토지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지분면적 (㎡)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비고
		단가(원/㎡)	가액(원)	단가(원/㎡)	가액(원)	
1	499.71	91,000	24,985,500	92,000	45,973,320	오인환 지분
2	1,829.57	18,000	133,558,610	19,000	34,761,830	"

나. 시산가액의 조정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가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고 감정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일련번호	지분면적 (㎡)	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499.71	91,000	45,473,610	상세내역은 명세표 참조
2	1,829.57	18,000	32,932,260	
합 계			78,405,870	

끝.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447-1	전	계획관리지역	1 3,498x- 7	499.71	91,000	45,473,610	오인환 지분 제시외분묘로 소유권행사 제한 받는 경우 단가 @88,000
2	동소	488-6	임야	보전관리지역	2 12,087x-- 14	1,829.57	18,000	32,932,260	오인환 지분
합 계								₩78,405,87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소재 '가덕2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및 제반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자루형 완경사지로서, 가격조사일 현재 '휴경지 및 일부 분묘' 로 이용 중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가격조사일 현재 '자연림 및 일부 분묘' 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약 폭 2.5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창02(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2)

보전관리지역, 기타유류저장및송유설비(저축), 종로1류(폭 20m~25m)(2015-05-20)(종로1-7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법률>, 접도구역(2020-06-01)(국가지원지방도70호선(서산~춘천))<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토지상에 분묘 4기와 기호(2) 토지에는 항공사진상 분묘1가 소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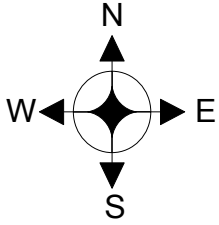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의 지목은 '답 및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분묘' 로 이용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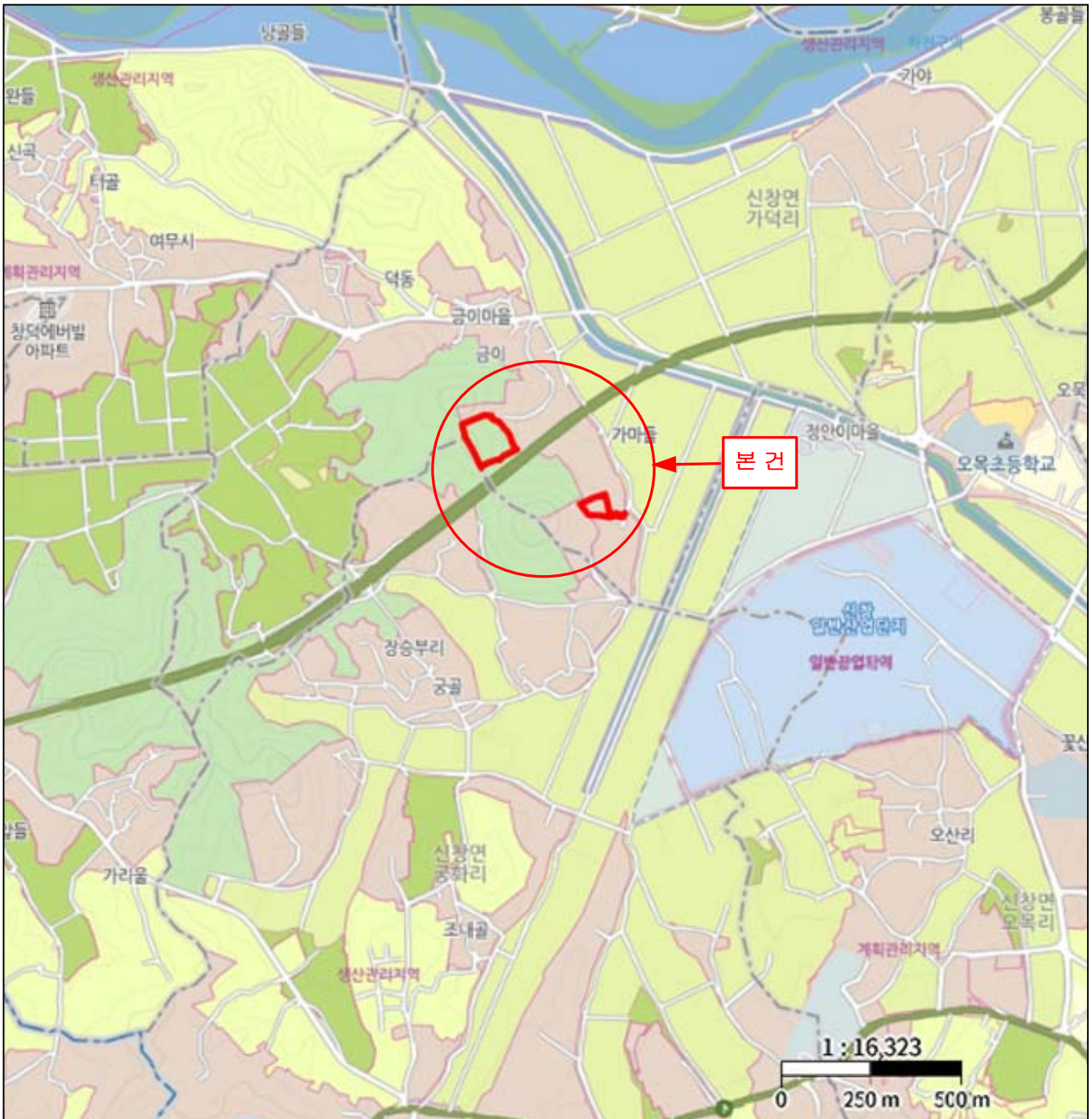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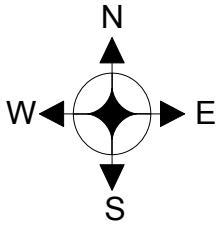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447-1 외 1필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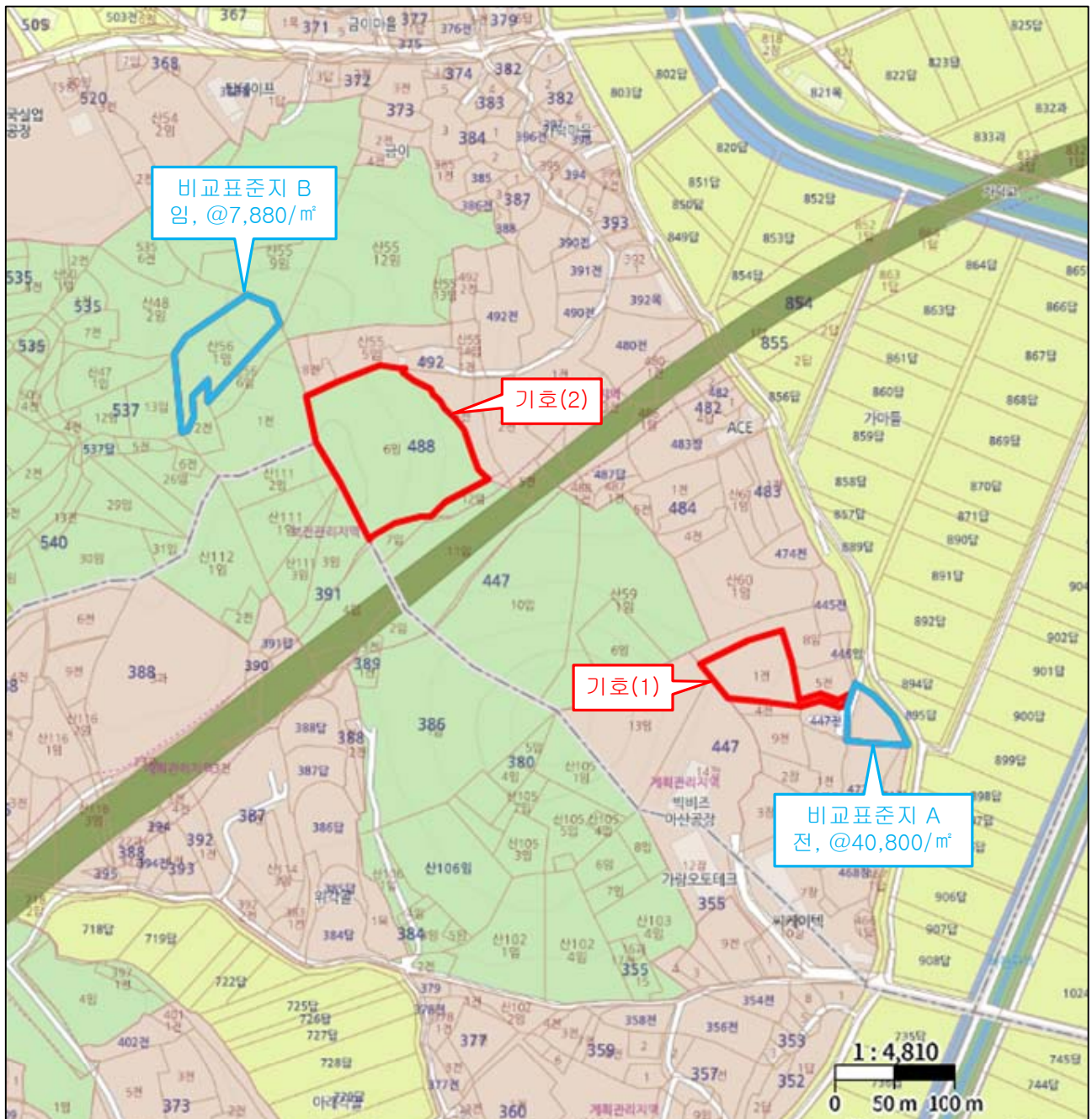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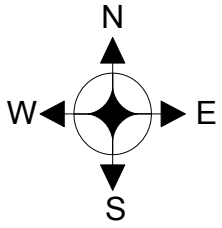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447-1 외 1필지



항공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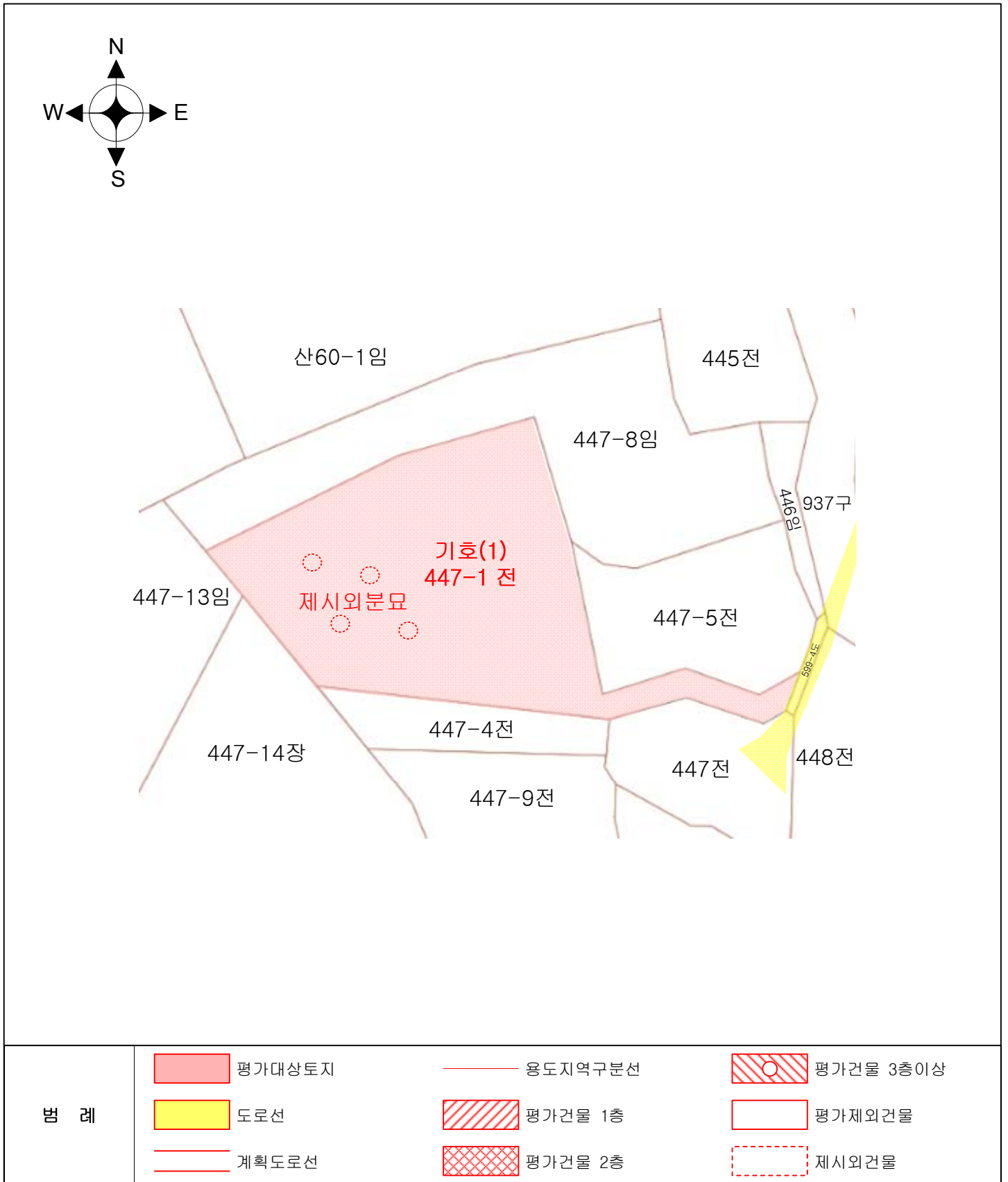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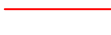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447-1 외 1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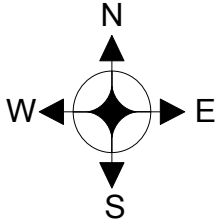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지 적 개 황 도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1)



(1)



(1)



(2)



(2)